

학생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동남대학교 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대학교육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의 실천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 제56조(학생자치기구) ①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동남보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권리) ①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은 학생활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기타 정치활동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성토,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7조(효력정지) 본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8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 연구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5.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등 학생 자치활동

제9조(기구)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학생회, 대의원회, 미디어센터,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②단, 1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대의원회의 운영 및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학생연합회를 둔다.

제 2 장 총학생회

제10조(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제11조(피선거권의 자격 및 선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 및 선거방법은 선거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업무 및 권한) ①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각 부서를 총괄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②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각 국장의 임명을 추천한다.

③총학생회장은 총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중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총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의결을 거쳐 총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부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시 부학생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부학생회장이 없는 경우는 학생회장이 지정한자로 한다.

제14조(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2. 학생회의 제반사업 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안을 편성하여 총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총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나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7조(부서) 집행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국 : 본회의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사무를 담당한다.
2. 정책기획국 : 본회가 주관하는 학생활동의 정책 설정 및 기획을 담당한다.
3. 홍보국 : 본회의 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4. 문화국 : 각종 문화 활동 및 건전한 대학문화 창출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5. 사회국 : 학생봉사단운영과 각종 지역사회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여학생국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복지국 : 재학생들의 각종 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학술국 : 본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18조(지위) 대의원회는 본 회의 감사기구이며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대표한다.

제19조(구성) ①대의원회는 각학과 1명씩 선발하여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의장·부의장 및 각 분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서 선출한다.

③대의원회의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분과 : 대의원회 사무와 재정을 관리한다.
2. 기획분과 : 대의원회 행사 기획 및 관리한다.
3. 감사분과 : 학생자치기구의 행정 및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4. 복지분과 : 학생 복지정책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진행한다
5. 홍보분과 : 행정 및 회계감사 결과 및 학교행사를 홍보업무를 진행한다.

제20조(업무 및 기능) 대의원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기구 회계, 서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권
2. 학생 복지정책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
3. 총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집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21조(회비 등) ①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다.

③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학생회장의 요청에 따라 총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대학 당국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예산편성) ①자치기구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운영회의 심의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예산 승인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추경 예산편성 시에는 총운영위원회 심의와 학생지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예산안이 총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자치기구의 장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시에는 학생자치회비 사용규칙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 및 결산) ① 자치기구의 장은 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자치기구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학생지원팀에 보고한 다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 및 결산 시 예산집행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의원회는 자치기구장 및 집행위원회 해당부서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불신임을 제청할 수 있다.

④ 사업별 결산보고 시 위배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학당국은 대의원회에 비정기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기구장은 대의원회에 문서로써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5 장 총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① 본 회의 활동을 육성하고, 정책 심의를 위하여 총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회장과 각 학과를 대표하는 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단, 필요시 약간명의 학생자치기구 임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7조(운영 및 기능) ① 본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 승인
2.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의결
3. 학생회비 책정 심의 및 의결
4. 학생회의 회계, 서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권
5. 학생자치기구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6. 회칙개정 발의 및 의결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학생연합회

제28조(지위) 학생연합회는 총학생회, 대의원회 회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업무를 대행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제29조(구성 및 업무) ①학생연합회는 각 학과를 대표하는 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②학생연합회의 회장은 학생연합회를 대표하며 학생연합회 회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③학생연합회의 부회장은 학생연합회 회장을 보좌하며 학생연합회 회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학생연합회 회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④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연합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장 : 학생연합회회의 사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2. 감사부장 : 학생연합회회의 행정 및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3. 연대사업부장 : 학생연합회회의 활동의 행사 관리를 담당한다.
4. 홍보부장 : 학생연합회회의 활동 및 학교 행사에 대한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5. 환경부장 : 각종 지역사회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서기부장 : 학생연합회회의 회의 문서, 기록을 담당한다.

⑤ 제4항의 부서 이외에도 학생연합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0조(기능) 학생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복지정책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행사 주최 및 진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장 보 칙

제33조(회칙개정) ①본 회칙의 개정은 총운영위원회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총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과한 개정회칙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는 미디어센터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36조(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는 학생단체(중앙동아리) 등록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2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